

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관리번호	처리기간	즉시
① 신고 기관	법인명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전자우편	전화번호
	주소	

② 신고 내용

- 조직 기준(「의료법 시행령」 제24조제3항)

전산장비 구비 여부		사무실 구비 여부		전담부서 명칭	상근인력 인원수
여	부	여	부		

- 소비자단체 요건(「의료법 시행령」 제24조제4항) ※ 소비자 단체만 적용됩니다

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등 등록 단체 여부		단체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	
여	부	여	부

「의료법」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신고인 첨부서류	1. 공통서류 가. 의료광고 심의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전담부서 및 3명 이상의 상근인력 현황 나. 전산장비 및 사무실 구비 현황 2. 소비자단체 추가 제출서류 가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등록증 사본 나. 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